

보 고 번 호	회 의 자 수	회 의 일 자	보 고 자
제 89 호	제 13 자	1990. 6. 7	중 재 김 건

보 고 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보고사항 1990.5.17 제12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3조의 2에 의거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중에서 한국은행중재가 중소기업지원 등 예외적으로 담보취득을 인정하는 경우와 담보취득후 담보취득 금지대상에 해당하게 된 부동산담보의 해지시한을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에 규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함.

보고관계 법규조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2조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

금융기관은 「한국은행법」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

9. 한국은행중재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지급보증 및 인수업무의 취급 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4조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중재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 개정내용

[illegible]